

도시관리계획(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 고시

도시관리계획(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기본법』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.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 560-5774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3. 12. 09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명 칭 : 도시관리계획(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
2. 위 치 : 서구 원당동·당하동 일원
3.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 -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: 변경 없음
 - 용도지역 및 지구 결정 조서 : 변경 없음
 -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

1.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 : 변 경

1) 도 로 : 변 경

■ 도로 결정(변경) 총괄표

유 별		합 계			1 류			2 류			3 류		
	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	노선수	연장 (m)	면적 (㎡)
합 계	기정	129	20,783	234,053.0	16	5,410	68,964.5	50	7,931	78,321.4	63	7,442	86,767.1
	변경	129	20,783	234,052.9	16	5,410	68,964.5	50	7,931	78,321.3	63	7,442	86,767.1
광로	기정	1	1,030	40,645.2	-	-	-	-	-	-	1	1,030	40,645.2
중로	기정	10	5,327	82,418.4	4	2,545	40,630.8	2	1,007	19,576.5	4	1,775	22,211.1
소로	기정	118	14,426	110,989.4	12	2,865	28,333.7	48	6,924	58,744.9	58	4,637	23,910.8
	변경	118	14,426	110,989.3	12	2,865	28,333.7	48	6,924	58,744.8	58	4,637	23,910.8

■ 도로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규 모				기 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광로	3	23	40	주간선도로	1,030 (총 9,095)	동측 지구계	광로 3-25	일반 도로		1998. 6.12	
소계	3	1개노선		-	1,030	-	-	-			
중로	1	116	20	집 산 도 로	228 (총 1,366)	광로 3-24	중로 1-120	일반 도로		1998. 6.12	
중로	1	120	20	보조산도로	1,330 (총 4,290)	대로 2-61	대로 3-58	일반 도로		1998. 6.12	버스 베이 설치
중로	1	127	20	집 산 도 로	488	광로 3-23	중로 1-120	일반 도로		1999. 6.23	
중로	1	128	20	집 산 도 로	499	광로 3-23	중로 1-120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계	1	4개노선		-	2,545	-	-	-			

주) ()는 노선전체에 대한 사항임

규 모				기 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중로	2	173	17	집 산 도 로	462	중로 1-120	중로 1-127	일반 도로		1999. 6.23	
중로	2	174	17	집 산 도 로	545	중로 1-120	중로 1-128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계	2	2개노선		-	1,007	-	-	-			
중로	3	107	12	집 산 도 로	779	광로3-23	중로1-120	일반 도로		1999. 6.23	
중로	3	108	12	집 산 도 로	322	중로 3-107	소로 3-38	일반 도로		1999. 6.23	
중로	3	111	12	집 산 도 로	483	광로 3-23	중로2-174	일반 도로		1999. 6.23	
중로	3	112	12	집 산 도 로	191	중로 1-120	소로 2-41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계	3	4개노선		-	1,775	-	-	-			
소로	1	1	10	국 지 도 로	604	중로 1-116	중로 1-120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1	2	10	국 지 도 로	421	중로 1-127	중로 1-127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1	3	10	국 지 도 로	313	광로 3-23	중로 1-127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1	4	10	국 지 도 로	357	중로 3-107	중로 3-108	일반 도로		2001. 8.30	
소로	1	5	10	국 지 도 로	143	소로 1-4	소로 1-6	일반 도로		2001. 8.30	
소로	1	6	10	국 지 도 로	116	중로 3-107	소로 1-4	일반 도로		2001. 8.30	
소로	1	7	10	국 지 도 로	105	중로 1-120	중로 3-107	일반 도로		2001. 8.30	

규 모				기 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소로	1	8	10	국 지 도 로	132	중로 3-108	소로 1-6	일반 도로		2001. 8.30	
소로	1	9	10	국 지 도 로	89	소로 1-8	소로 1-4	일반 도로		2001. 8.30	
소로	1	10	10	국 지 도 로	113	중로 3-108	소로 1-4	일반 도로		2001. 8.30	
소로	1	11	10	국 지 도 로	417	중로 1-128	중로 1-128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1	12	10	국 지 도 로	55	중로 1-128	소로 1-11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1	12개노선			2,865	-	-			-	
소로	2	1	8	국 지 도 로	158	중로 1-120	소로 1-1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2	2	8	국 지 도 로	353	소로 1-1	소로 2-1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2	3	8	국 지 도 로	27	중로1-120	소로3-4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2	4	8	국 지 도 로	58	소로 1-1	- (원당동 656-21)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2	5	8	국 지 도 로	37	소로 2-1	소로 3-8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2	6	8	국 지 도 로	49	소로 2-1	소로 3-9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2	7	8	국 지 도 로	225	중로 2-173	- (원당동 790)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2	8	8	국 지 도 로	93	소로 2-7	소로 1-3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2	9	8	국 지 도 로	92	소로 2-7	소로 1-3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2	10	8	국 지 도 로	93	소로 2-7	소로 1-3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2	11	8	국 지 도 로	102	소로 2-7	소로 1-3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2	12	8	국 지 도 로	100	소로 2-11	소로 1-3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2	13	8	국 지 도 로	289	소로 1-4	소로 1-3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2	14	8	국 지 도 로	74	소로 2-13	소로 1-3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2	15	8	국 지 도 로	41	소로 1-3	소로2-17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2	16	8	국 지 도 로	120	소로 2-17	소로 2-17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2	17	8	국 지 도 로	315	소로 1-3	소로2-17	일반 도로		1999. 6.23	

규 모				기 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소로	2	18	8	국 지 도 로	609	소로 2-18	소로 2-18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2	19	8	국 지 도 로	23	중로 1-120	소로 2-18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2	20	8	국 지 도 로	35	중로 3-107	소로 2-18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2	21	8	국 지 도 로	14	중로 3-107	동측 지구계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2	22	8	국 지 도 로	190	중로 3-107	소로 1-8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2	23	8	국 지 도 로	56	중로 3-107	소로 2-22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2	24	8	국 지 도 로	49	소로 2-22	소로 3-32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2	25	8	국 지 도 로	118	소로 1-4	소로 1-6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2	26	8	국 지 도 로	82	소로 1-8	소로 1-4	일반 도로		2001. 8.30	
소로	2	27	8	국 지 도 로	328	소로 1-8	소로 2-27	일반 도로		2001. 8.30	
소로	2	28	8	국 지 도 로	55	소로 2-27	소로 2-27	일반 도로		2001. 8.30	
소로	2	29	8	국 지 도 로	37	중로 3-107	소로 2-27	일반 도로		2001. 8.30	
소로	2	30	8	국 지 도 로	8	중로 3-107	- (원당동 778-11)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2	31	8	국 지 도 로	24	중로 3-107	- (원당동 778)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2	32	8	국 지 도 로	9	중로 3-107	- (원당동 561)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2	33	8	국 지 도 로	216	중로 3-107	소로 2-33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2	34	8	국 지 도 로	41	중로 3-111	소로 2-35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2	35	8	국 지 도 로	331	중로 3-111	소로 2-35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2	36	8	국 지 도 로	368	중로 3-111	중로 3-111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2	37	8	국 지 도 로	85	소로 2-38	소로 2-36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2	38	8	국 지 도 로	103	소로 2-36	소로 2-36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2	39	8	국 지 도 로	179	광로 3-23	소로 2-40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2	40	8	국 지 도 로	134	중로 1-120	소로 2-39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2	41	8	국 지 도 로	291	소로 2-47	- (당하동 984-2)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2	42	8	국 지 도 로	195	중로 3-112	소로 2-48	일반 도로		1999. 6.23	

규 모				기 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소로	2	43	8	국 지 도 로	26	소로 2-42	남측 지구계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2	44	8	국 지 도 로	90	소로 2-45	소로 2-41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2	45	8	국 지 도 로	204	소로 2-41	- (당하동 325)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2	46	8	국 지 도 로	161	소로 2-41	소로 2-47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2	47	8	국 지 도 로	174	소로 2-45	소로 2-48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2	48	8	국 지 도 로	463	소로 2-41	소로 2-47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2	48개노선		-	6,924	-	-	-			
소로	3	1	6	국 지 도 로	147	소로 2-1	소로 2-2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3	2	6	국 지 도 로	37	소로 1-1	소로 3-1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3	3	6	국 지 도 로	99	소로 2-2	소로 3-4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3	4	6	국 지 도 로	268	소로 2-2	소로 2-2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3	5	4	국 지 도 로	72	소로 2-2	소로 3-4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3	6	6	국 지 도 로	46	소로 1-1	소로 2-2	일반 도로		1999. 6.23	
소로	3	7	3	특 수 도 로	13	중로 1-116	소로 2-4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8	3	특 수 도 로	11	중로 1-116	소로 2-5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9	3	특 수 도 로	16	중로 1-116	소로 2-6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10	3	특 수 도 로	368	소로 1-1	소로 2-4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11	3	특 수 도 로	15	소로 1-1	소로 3-10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12	3	특 수 도 로	18	중로 1-1	소로 3-10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13	3	특 수 도 로	29	중로 1-120	소로 3-3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14	3	특 수 도 로	40	중로 1-120	소로 3-4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15	3	특 수 도 로	153	소로 1-1	소로 1-1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16	3	특 수 도 로	216	소로 1-1	중로 2-173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17	3	특 수 도 로	303	소로 2-7	소로 3-16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
규 모				기 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소로	3	18	3	특수도로	36	소로 2-13	소로2-13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19	3	특수도로	30	광로 3-23	소로 2-14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20	3	특수도로	10	광로 3-23	소로 2-17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21	3	특수도로	7	광로 3-23	소로 2-17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22	3	특수도로	155	중로 1-127	중로 2-173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23	4	특수도로	35	광로 3-23	소로 1-2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24	4	특수도로	32	광로 3-23	소로 1-2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25	4	특수도로	35	광로 3-23	소로 1-2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26	2	특수도로	295	소로 2-21	북측 지구계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27	3	특수도로	40	소로 2-18	소로 2-18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28	3	특수도로	36	소로 3-27	소로 3-26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29	3	특수도로	23	중로 1-120	소로 2-18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30	3	특수도로	20	중로 1-120	소로 2-22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31	3	특수도로	20	중로 1-120	소로 2-22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32	3	특수도로	16	중로 3-107	소로 2-24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33	3	특수도로	26	중로 3-107	소로 1-5	보행자 전용도로		2001. 8.30	
소로	3	34	3	특수도로	33	소로 1-5	소로 2-25	보행자 전용도로		2001. 8.30	
소로	3	35	3	특수도로	26	중로 3-107	소로 1-8	보행자 전용도로		2001. 8.30	
소로	3	36	3	특수도로	43	중로 3-107	소로 2-27	보행자 전용도로		2001. 8.30	
소로	3	37	3	특수도로	23	중로 1-120	소로 2-27	보행자 전용도로		2001. 8.30	
소로	3	38	3	특수도로	580	중로 3-107	중로 3-108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39	6	특수도로	30	중로 3-107	- (원당동 566)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40	6	특수도로	15	중로 1-120	- (원당동 568-6)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
규 모				기 능	연장 (m)	기 점	종 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소로	3	41	3	특수도로	10	광로 3-23	- (원당동 565)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42	3	특수도로	10	광로 3-23	- (원당동 562)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43	3	특수도로	32	광로 3-23	소로 2-33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44	3	특수도로	10	광로 3-23	소로 2-35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45	3	특수도로	10	광로 3-23	- (당하동 13-2)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46	4	특수도로	201	중로 1-128	중로 3-111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47	3	특수도로	229	소로 2-35	소로 2-36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48	3	특수도로	18	소로 2-36	소로 3-47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49	4	특수도로	32	광로 3-23	소로 1-11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50	4	특수도로	32	광로 3-23	소로 1-11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51	4	특수도로	35	광로 3-23	소로 1-11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52	4	특수도로	229	중로 1-128	중로 2-174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53	3	특수도로	23	중로 1-120	소로 2-39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54	3	특수도로	170	소로 2-40	소로 2-41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55	3	특수도로	57	중로 3-112	소로 2-42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56	3	특수도로	33	소로 2-48	소로 2-46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57	3	특수도로	34	소로 2-48	소로 2-47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58	4	특수도로	55	중로 1-127	소로 1-2	보행자 전용도로		1999. 6.23	
소로	3	58개노선		-	4,637	-	-	-			

2) 주차장 : 변경없음

■ 주차장 결정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 설 명	위 치	면 적(m ²)	최 초 결정일	비 고
계	-	-	-	5,638.1	-	
기정	1	주차장	원당동825-1	1,409.5	1999.6.23	
기정	2	주차장	원당동825-8	1,409.1	1999.6.23	
기정	3	주차장	당하동1029-1	1,411.3	1999.6.23	
기정	4	주차장	당하동1030-6	1,408.2	1999.6.23	

3) 공 원 : 변경없음

■ 공원 결정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 설 의 세 분	위 치	면적(m ²)	최 초 결정일	비 고
계	-	-	-	-	44,932.5	-	
기정	1	공원	근린공원	원당동 811-2	18,321.3	1999.6.23	
기정	2	공원	근린공원	원당동 824-11	10,226.9	1999.6.23	
기정	3	공원	근린공원	원당동 849	11,114.7	2001.8.30	
기정	4	공원	어린이공원	원당동 805-3	2,949.5	1999.6.23	
기정	5	공원	어린이공원	당하동 1041	2,320.1	2000.6.26	

4) 녹 지 : 변경없음

■ 녹지 결정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시설명	시 설 의 세 분	위 치	면적(㎡)	최 초 결정일	비 고
계	-	-	-	-	13,933.1	-	
소계	-	-	-	-	9,162.4	-	완충녹지
기정	1	녹 지	완충녹지	원당동 811-9	388.2	1999.6.23	
기정	2	녹 지	완충녹지	원당동 820-2	418.0	1999.6.23	
기정	3	녹 지	완충녹지	원당동 820-3	1147.2	1999.6.23	
기정	4	녹 지	완충녹지	원당동 820-4	106.0	1999.6.23	
기정	5	녹 지	완충녹지	당하동 1019-1	913.6	1999.6.23	
기정	6	녹 지	완충녹지	당하동 1027-1	928.5	1999.6.23	
기정	7	녹 지	완충녹지	당하동 1027-2	838.9	1999.6.23	
기정	8	녹 지	완충녹지	원당동 854-11	374.8	1999.6.23	
기정	9	녹 지	완충녹지	원당동 854-10	801.1	1999.6.23	
기정	10	녹 지	완충녹지	원당동 854-9	942.4	1999.6.23	
기정	11	녹 지	완충녹지	원당동 855-3	170.3	1999.6.23	
기정	12	녹 지	완충녹지	원당동 858	539.0	1999.6.23	
기정	13	녹 지	완충녹지	당하동 1033-6	675.4	1999.6.23	
기정	14	녹 지	완충녹지	당하동 1035	919.0	1999.6.23	
소계	-	-	-	-	4,770.7	-	경관녹지
기정	15	녹 지	경관녹지	원당동 795-1	114.7	1999.6.23	
기정	16	녹 지	경관녹지	원당동 801	1,196.9	1999.6.23	
기정	17	녹 지	경관녹지	원당동 840-6	986.6	1999.6.23	
기정	18	녹 지	경관녹지	원당동 854-13	298.1	1999.6.23	
기정	19	녹 지	경관녹지	원당동 854-6	107.7	1999.6.23	
기정	20	녹 지	경관녹지	당하동 1036-2	207.1	2000.6.26	
기정	21	녹지	경관녹지	원당동 887-2	479.7	2010.10.4	
기정	22	녹지	경관녹지	원당동 887-1	98.2	2010.10.4	
기정	23	녹지	경관녹지	원당동 853-5	523.0	2010.10.4	
기정	24	녹지	경관녹지	원당동 857-1	111.3	2010.10.4	
기정	25	녹지	경관녹지	당하동 1037-5	59.2	2010.10.4	
기정	26	녹지	경관녹지	당하동 1037-6	143.0	2010.10.4	
기정	27	녹지	경관녹지	당하동 1061-1	142.0	2010.10.4	
기정	28	녹지	경관녹지	원당동 810-14	303.2	2010.10.4	

5) 학 교 : 변경없음

■ 학교 결정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 설 의 세 분	위 치	면적(m ²)	최 초 결정일	비 고
계	-	-	-	-	57,715.8	-	
기정	1	학 교	고등학교	원당동 852-3	12,053.0	1999.6.23	
기정	2	학 교	중학교	원당동 852-2	11,419.5	1999.6.23	
기정	3	학 교	초등학교	원당동 809	12,215.1	1999.6.23	
기정	4	학 교	초등학교	당하동 1022	11,247.3	1999.6.23	
기정	5	학 교	초등학교	당하동 1038-1	10,780.9	2000.6.26	

6) 공공청사 : 변경없음

■ 공공청사 결정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 설 의 세 분	위 치	면적(m ²)	최 초 결정일	비 고
계	-	-	-	-	5,368.6	-	
기정	1	공공청사	동사무소	원당동 853-1	1,990.1	1999.6.23	
기정	2	공공청사	우체국	원당동 823-2번지	1,264.9	1999.6.23	
기정	3	공공청사	파 출 소	원당동 854-1	970.3	1999.6.23	
기정	4	공공청사	소방파출소	원당동 854-2	1,143.3	1999.6.23	

7) 하 천

■ 하천 결정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 설 의 세 분	위 치	면적(m ²)	최 초 결정일	비 고
기정	1	하천	하천	원당동 851-4	5,150.3	1999.6.23	

8) 공공공지

■ 공공공지 결정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적(m ²)	최 초 결정일	비 고
계	-	-	-	1,436.9	2010.10.4	
기정	1	공공공지	원당동 873	884.7	2010.10.4	
기정	2	공공공지	원당동 836-4	379.1	2010.10.4	
기정	3	공공공지	원당동 849-1	119.8	2010.10.4	
기정	4	공공공지	원당동 857-2	53.3	2010.10.4	

·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1. 단독주택용지(A-1 용도) : 변 경

기 정						변 경					
도면 표시	가 구 번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	도면 표시	가 구 번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 적(㎡)					위 치	면 적(㎡)	
A-1	1-1	615.7	1	387.5		A-1	1-1	615.7	1	387.5	
			2	228.2					2	228.2	
	2	893.4	1	316.4			2	893.4	1	316.4	
			2-1	270.2					2-1	270.2	
			2-2	306.8					2-2	306.8	
	3	2,215.2	1	369.2			3	2,215.2	1	369.2	
			1-2	369.2					1-2	369.2	
			1-3	369.2					1-3	369.2	
			1-4	369.2					1-4	369.2	
			1-5	369.2					1-5	369.2	
			1-6	369.2					1-6	369.2	
	4	2,079.9	1	905.4	2획지로 분할		4	2,079.9	1	905.4	2획지로 분할
			2	1,174.5	4획지로 분할				2	1,174.5	4획지로 분할
	9	5,198.9	1	485.9			9	5,198.9	1	485.9	
			2	1,262.8	3획지로 분할				2	1,262.8	3획지로 분할
			3-1	298.1					3-1	298.1	
			3-2	299.5					3-2	299.5	
			3-3	298.2					3-3	298.2	
			3-4	299.7					3-4	299.7	
			4	1,775.1	6획지로 분할				4	1,775.1	6획지로 분할
			5	479.6					5	479.6	
	10	4,312.3	1-1	922.8	3획지로 분할		10	4,312.3	1-1	922.8	3획지로 분할
			1-2	664.0	2획지로 분할				1-2	664.0	2획지로 분할
			2-1	340.5					2-1	340.5	
			2-2	340.5					2-2	340.5	
			3	381.4					3	381.4	
			4-1	275.7					4-1	275.7	
			4-2	310.9					4-2	310.9	
			5	677.0	2획지로 분할				5	677.0	2획지로 분할
			6	399.5					6	399.5	
	11	2,521.8	1	1,629.3	5획지로 분할		11	2,521.8	1	1,629.3	5획지로 분할
			2	447.8					2	447.8	
			3	444.7					3	444.7	
	14	2,138.9	1	605.3	2획지로 분할		14	2,138.9	1	605.3	2획지로 분할
			2	306.1					2	306.1	
			3	347.3					3	347.3	
			4	291.5					4	291.5	
			5	182.1					5	182.1	
			6	406.6					6	406.6	

기 정						변 경					
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	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 적(㎡)					위 치	면 적(㎡)	
A-1	15	3,058.0	1	595.9		A-1	15	3,058.0	1	595.9	
			2	1196.9	2획지로 분할				2	1196.9	2획지로 분할
			3	432.3					3	432.3	
			4-1	277.5					4-1	277.5	
			4-2	277.6					4-2	277.6	
			4-3	277.8					4-3	277.8	
	21	5,284.4	1	389.3			21	5,282.4	1	389.3	
			2	389.6					2	389.6	
			3-1	349.8					3-1	349.8	
			3-2	656.6					3-2	656.6	
			3-3	570.0	2획지로 분할				3-3	570.0	2획지로 분할
			4	612.5	2획지로 분할				4	612.5	2획지로 분할
			5	566.1	2획지로 분할				5	566.1	2획지로 분할
			6	335.5					6	335.5	
			7-1	352.5					7-1	352.5	
			7-2	330.8					7-2	330.8	
			7-3	330.6					7-3	330.6	
			8	399.1					8	399.1	
	22	2,136.8	1	369.4			22	2,138.6	1	369.4	
			2	470.1	2획지로 분할				2	470.1	2획지로 분할
			3	692.8	3획지로 분할				3	692.8	3획지로 분할
			4	288.3					4	288.3	
			5	318.0					5	318.0	
	23-1	1,271.7	1	674.6	2획지로 분할		23-1	1,271.7	1	674.6	2획지로 분할
			2	597.1	2획지로 분할				2	597.1	2획지로 분할
	23-2	1,287.4	4-1	415.0			23-2	1,287.4	4-1	415.0	
			4-2	397.8					4-2	397.8	
			4-3	474.6					4-3	474.6	
	27	5,560.6	1	603.6	2획지로 분할		27	5,560.6	1	603.6	2획지로 분할
			2	412.4					2	412.4	
			3-1	387.8					3-1	387.8	
			3-2	379.7					3-2	379.7	
			3-3	379.7					3-3	379.7	
			3-4-1	324.8					3-4-1	324.8	
			3-4-2	324.7					3-4-2	324.7	
			3-4-3	324.7					3-4-3	324.7	
			3-4-4	334.0					3-4-4	334.0	
			3-4-5	334.0					3-4-5	334.0	
			3-4-6	334.1					3-4-6	334.1	
			4	198.1					4	198.1	
			5	549.4					5	549.4	
			6-1	231.2					6-1	231.2	
			6-2	442.4					6-2	442.4	

기 정						변 경					
도면 표시	가구 번호	면 적 (㎡)	확 지		비 고	도면 표시	가구 번호	면 적 (㎡)	확 지		비 고
			위 치	면 적(㎡)					위 치	면 적(㎡)	
A-1	54-1	1,483.3	1-1	317.6		A-1	54-1	1,483.3	1-1	317.6	
			1-2	741.6	3확자로 분할				1-2	741.6	3확자로 분할
			1-3	424.1					1-3	424.1	
	54-2	1,258.5	3-1	282.0			54-2	1,258.5	3-1	282.0	
			3-2	231.5					3-2	231.5	
			3-3	231.4					3-3	231.4	
			3-4	231.5					3-4	231.5	
			3-5	282.1					3-5	282.1	
	55	2,327.8	1	579.2	2확자로 분할		55	2,327.8	1	579.2	2확자로 분할
			1-2-1	525.4	2확자로 분할				1-2-1	525.4	2확자로 분할
			1-2-2	1,223.2	4확자로 분할				1-2-2	305.8	
	56	1,854.3					56	1,854.3	1-2-3	305.8	
									1-2-4	305.8	
									1-2-5	305.8	
	57	1,276.3	1	811.5	4확자로 분할		57	1,276.3	1	811.5	4확자로 분할
			2	464.8	2확자로 분할				2	464.8	2확자로 분할
	58-1	769.9	1	769.9	2확자로 분할		58-1	769.9	1	769.9	2확자로 분할
	59	3,508.0	1-1	291.8			59	3,508.0	1-1	291.8	
			1-2	291.8					1-2	291.8	
			2-1	253.3					2-1	253.3	
			2-2	258.4					2-2	258.4	
			2-3	297.5					2-3	297.5	
			2-4	301.6					2-4	301.6	
			2-5	304.7					2-5	304.7	
			2-6	300.5					2-6	300.5	
			2-7	304.6					2-7	304.6	
			2-8	304.7					2-8	304.7	
			2-9	301.6					2-9	301.6	
			2-10	297.5					2-10	297.5	
	60	3,314.7	1-1-1	247.7			60	3,314.7	1-1-1	247.7	
			1-1-2	247.7					1-1-2	247.7	
			1-2	495.4	2확자로 분할				1-2	495.4	2확자로 분할
			2-1-1	267.1					2-1-1	267.1	
			2-1-2	304.3					2-1-2	304.3	
			2-1-3	300.3					2-1-3	300.3	
			2-1-4	290.2					2-1-4	290.2	
			2-2	774.5	3확자로 분할				2-2	774.5	3확자로 분할
	61	3,426.0	2-3	387.5			61	3,426.0	2-3	387.5	
					13확지 분할				1-1	1,156.0	4확지 분할
									1-2	2,270.0	8확지 분할

기 정						변 경					
도면 표시	가 구 번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	도면 표시	가 구 번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 적(㎡)					위 치	면 적(㎡)	
A-1	62	2,098.9	1-1	561.5	2획지로 분할	A-1	62	2,099.8	1-1	561.5	2획지로 분할
			1-2	568.3	2획지로 분할				1-2-1	294.5	
									1-2-2	273.8	
			2-1-2	299.9					2-1-2	299.9	
			2-2	359.9					2-2	359.9	
			2-3	310.2					2-3	310.2	
	64	2,860.9	1	2,504.1	8획지로 분할		64	2,860.9	1	2,504.1	8획지로 분할
			2	356.8					2	356.8	
	65-1	815.0	1	815.0	3획지로 분할		65-1	815.0	1	815.0	3획지로 분할
	66	5,102.2	1-1	370.0			66	5,102.2	1-1	370.0	
			1-2	422.2					1-2	422.2	
			1-3	420.6					1-3	420.6	
			1-4	358.9					1-4	358.9	
			1-5	356.5					1-5	356.5	
			1-6	354.2					1-6	354.2	
			1-7	356.2					1-7	356.2	
			1-8	385.7					1-8	385.7	
			2-1	1,731.1	5획지로 분할				2-1	1,731.1	5획지로 분할
			2-2	346.8					2-2	346.8	
	67	4,750.9	1-1	317.7			67	4,750.9	1-1	317.7	
			1-2	317.8					1-2	317.8	
			1-3	317.8					1-3	317.8	
			1-4	317.8					1-4	317.8	
			1-5	317.7					1-5	317.7	
			1-6	317.8					1-6	317.8	
			1-7	317.8					1-7	317.8	
			1-8	317.4					1-8	317.4	
			2-1	330.6					2-1	330.6	
			2-2	309.6					2-2	309.6	
			2-3	309.6					2-3	309.6	
			2-4	309.5					2-4	309.5	
			2-5	309.6					2-5	309.6	
			2-6	309.6					2-6	309.6	
			2-7	330.6					2-7	330.6	
	79-2	1,589.6	2	868.8	2획지로 분할		79-2	1,589.6	2	868.8	2획지로 분할
			3	338.7					3	338.7	
			4	382.1					4	382.1	
	81-1	1,900.7	1	814.9	3획지로 분할		81-1	1,907.0	1	814.9	3획지로 분할
			2	1,092.1	3획지로 분할				2-1	298.1	
	82	1,500.0					82	1,500.0	2-2	298.1	
									2-3	495.9	
			1-1	305.6					1-1	305.6	
			1-2	274.7					1-2	274.7	
			1-3	338.0					1-3	338.0	
			1-4	289.9					1-4	289.9	
			1-5	291.8					1-5	291.8	

기 정						변 경					
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	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 적(㎡)					위 치	면 적(㎡)	
A-1	83	1,082.4	1	1,082.4	2획지로 분할	A-1	83	1,082.4	1	1,082.4	2획지로 분할
	86	3,574.6	1	802.4	2획지로 분할		86	3,574.6	1	802.4	2획지로 분할
			2-1	371.3					2-1	371.3	
			2-2	296.5					2-2	296.5	
			2-3-1	334.1					2-3-1	334.1	
			2-3-2	334.9					2-3-2	334.9	
			3-1	356.0					3-1	356.0	
			3-2	356.8					3-2	356.8	
			3-3	362.4					3-3	362.4	
			3-4	360.2					3-4	360.2	
			89	1,749.3	1-1				295.4		89
	1-2	290.6					1-2	290.6			
	1-3	290.6					1-3	290.6			
	1-4	290.7					1-4	290.7			
	1-5	290.6					1-5	290.6			
	1-6	291.4					1-6	291.4			
	90	2,630.4	1	2,630.4	9획지로 분할		90	2,630.4	1	2,630.4	9획지로 분할
	91	4,070.9	1	4,070.9	13획지로 분할		91	4,070.9	1	4,070.9	13획지로 분할
	92	4,263.4	1	4,263.4	13획지로 분할		92	4,263.4	1-1	243.3	
									1-2	312.9	
									1-3	312.9	
									1-4	312.9	
									1-5	313.1	
									1-6	313.1	
									1-7	313.1	
									1-8	268.0	
									1-9	290.2	
									1-10	340.1	
									1-11	294.1	
									1-12	313.9	
									1-13	314.9	
									1-14	320.9	

2. 단독주택용지(A-2 용도) : 변 경

기 정						변 경					
도면 표시	가 구 번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	도면 표시	가 구 번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 적(㎡)					위 치	면 적(㎡)	
A-2	5	2,348.8	1	219.5		A-2	5	2,348.8	1	219.5	
			2-1	663.8					2-1	663.8	
			2-2	562.4					2-2	562.4	
			3	639.7					3	639.7	
			4	263.4					4	263.4	
	24	2,744.7	1-1	169.9			24	2,744.7	1-1	169.9	
			1-2	396.7					1-2	396.7	
			1-3	383.3					1-3	383.3	
			2	832.9	3획지로 분할				2	832.9	3획지로 분할
			3-1	455.4					3-1	455.4	
			3-2	506.5	2획지로 분할				3-2	506.5	2획지로 분할
	63	3,526.9	1-1	1,182.7	4획지로 분할		63	3,526.9	1-1	1,182.7	4획지로 분할
			2	1,186.5	5획지로 분할				2	1,186.5	5획지로 분할
			3-1	374.3					3-1	374.3	
			3-2	231.4					3-2	231.4	
			4	552.0	2획지로 분할				4-1	261.0	
	68-1	1,748.2	1	385.9			68-1	1,748.2	1	385.9	
			2	423.0					2	423.0	
			3-2	335.7					3-2	335.7	
			4-1	301.9					4-1	301.9	
			4-2	301.7					4-2	301.7	
	77-1	4,438.9	1	292.0			77-1	4,438.9	1	292.0	
			2	3,065.8	5획지로 분할				2	3,065.8	5획지로 분할
			3	1,081.1	2획지로 분할				3-1	541.1	
	80-2	643.6	10	643.6	2획지로 분할		80-2	643.6	10	643.6	2획지로 분할
	85-1	881.5	2	881.5	3획지로 분할		85-1	881.5	2	881.5	3획지로 분할
	87	2,658.8	1-1	346.7			87	2,658.8	1-1	346.7	
			1-2	330.5					1-2	330.5	
			1-3	330.6					1-3	330.6	
			1-4	346.8					1-4	346.8	
			2	309.7					2	309.7	
			3	296.3					3	296.3	
			4-1	368.2					4-1	368.2	
			4-2	330.0					4-2	330.0	

기 정						변 경					
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	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 적(㎡)					위 치	면 적(㎡)	
A-2	103-1	1,794.7	1-1	330.0		A-2	103-1	1,794.7	1	660.0	
			1-2	330.0					2	1,134.7	4획지로 분할
			2	1,134.7	4획지로 분할				1	663.3	2획지로 분할
	104	1,456.0	1	663.3	2획지로 분할		104	1,456.0	2	792.7	3획지로 분할
			2	792.7	3획지로 분할				1	344.9	
	105	2,018.6	1	344.9			105	2,018.6	2	302.3	
			2	302.3					3	540.1	2획지로 분할
			3	540.1	2획지로 분할				4	831.3	4획지로 분할
			4	831.3	4획지로 분할				1	664.8	
	107-1	664.8	1	664.8			107-1	664.8	1	664.8	
	108-2	1,113.7	1	280.4			108-2	1,113.7	1	280.4	
			2	833.3	3획지로 분할				2	833.3	3획지로 분할

3. 단독주택용지(A-3 용도) : 변 경

기 정						변 경					
도면 표시	가 구 번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	도면 표시	가 구 번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
			위치	면 적(㎡)					위치	면 적(㎡)	
A-3	7	3,333.2	1	1,354.5	4획지로 분할	A-3	7	3,332.3	1-1	347.0	
									1-2	346.9	
									1-3	330.4	
			1-4	330.3							
			2-1	362.2							
			2-2	346.5							
			2-3	258.6							
			3-1	350.6							
			3-2	659.8	2획지로 분할						
	8-1	3,063.0	1	905.3	2획지로 분할	8-1	3,063.0	1	905.3	2획지로 분할	
			2	660.7	2획지로 분할			2	660.7	2획지로 분할	
			3	521.8				3	521.8		
			4	203.0				4	203.0		
			5	772.2	2획지로 분할			5	772.2	2획지로 분할	
	12	2,888.3	1	660.4	2획지로 분할	12	2,888.3	1	660.4	2획지로 분할	
			2	638.7	2획지로 분할			2	638.7	2획지로 분할	
			3	467.8				3	467.8		
			4-1	330.7				4-1	330.7		
			4-2	330.7				4-2	330.7		
			4-3	460.0				4-3	460.0		
	13	1,296.3	1	158.8		13	1,296.3	1	158.8		
			2	227.2				2	227.2		
			3	910.3	2획지로 분할			3	910.3	2획지로 분할	
	16	3,824.4	1	795.9	3획지로 분할	16	3,824.4	1	795.9	3획지로 분할	
			2	592.9	2획지로 분할			2	592.9	2획지로 분할	
			3	314.1				3	314.1		
			4	734.7	2획지로 분할			4	734.7	2획지로 분할	
			5-1	832.1	3획지로 분할			5-1	832.1	3획지로 분할	
			5-2	277.4				5-2	277.4		
			5-3	277.3				5-3	277.3		
	17-1	5,298.3	1	1,108.5	3획지로 분할	17-1	5,298.3	1	1,108.5	3획지로 분할	
			2	239.9				2	239.9		
			3-1	304.2				3-1	304.2		
			3-2	330.6				3-2	330.6		
			3-3	663.3	2획지로 분할			3-3	663.3	2획지로 분할	
			4	1,142.0	3획지로 분할			4	1,142.0	3획지로 분할	
			5	715.8	3획지로 분할			5	715.8	3획지로 분할	
			6	794.0	3획지로 분할			6	794.0	3획지로 분할	
	30	1,519.7	1	589.6	2획지로 분할	30	1,519.7	1	589.6	2획지로 분할	
			2-1	304.5				2-1	304.5		
			2-2	625.6	2획지로 분할			2-2	625.6	2획지로 분할	
	31	1,116.4	1-1	279.0		31	1,116.4	1-1	279.0		
			1-2	279.1				1-2	279.1		
			1-3	279.1				1-3	279.1		
1-4			279.2		1-4			279.2			

기 정						변 경								
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	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			
			위 치	면 적(㎡)					위 치	면 적(㎡)				
A-3	32	3,141.7	1	1,718.5	6획지로 분할	A-3	32	3,141.7	1-1	257.7				
									1-2	257.8				
									1-3	280.0				
									1-4	661.0	2획지로 분할			
									1-5	262.0				
	33	1,949.7	2	1,423.2	5획지로 분할		33	1,949.7	1	1,551.1	5획지로 분할			
												2	231.9	
												3	166.7	
												1	1,298.5	4획지로 분할
												2-1	688.1	
	34	2,243.5	2-2	256.9			34	2,243.5	1	1,298.5	4획지로 분할			
												2-1	688.1	
												2-2	256.9	
	35-1	1,104.3	1	699.1	2획지로 분할		35-1	1,104.3	1	699.1	2획지로 분할			
												2	405.2	
	36-1	1,366.5	1	1,102.7	4획지로 분할		36-1	1,366.5	1	1,102.7	4획지로 분할			
												2	263.8	
	37-1	1,486.2	1	336.4			37-1	1,486.2	1	336.4				
												2	646.9	2획지로 분할
												3	502.9	2획지로 분할
	38	2,020.7	1-1	336.5			38	2,020.7	1-1	336.5				
												1-2	336.4	
												1-3	495.3	2획지로 분할
												2	852.5	3획지로 분할
	39	2,210.2	1	193.4			39	2,210.2	1	193.4				
												2	429.0	
												3	176.8	
												4	658.6	2획지로 분할
												5	752.4	2획지로 분할
	40	3,274.6	1	2,228.7	9획지로 분할		40	3,274.6	1	2,228.7	9획지로 분할			
												2	1,045.9	4획지로 분할
	42	4,256.2	1	705.4	2획지로 분할		42	4,256.5	1	705.4	2획지로 분할			
												2	878.4	2획지로 분할
												3	1,017.0	3획지로 분할
												4	779.2	2획지로 분할
												5-1	397.0	
												5-2	285.8	
												6	193.7	
												1-1	267.1	
	43	1,626.9	1-2	234.6			43	1,626.9	1-2	234.6				
												1-3	273.9	
												1-4	572.0	2획지로 분할
												1-5	279.3	
												1-1	337.1	2획지로 분할
	44	2,134.3	1-2	337.0			44	2,134.3	1-2	337.0				
												2-1	431.8	
												2-2	297.6	
												2-3	730.8	2획지로 분할
												2-3	730.8	2획지로 분할

기 정						변 경					
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	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 적(㎡)					위 치	면 적(㎡)	
A-3	47-1	1,658.7	1	1,025.7	4획지로 분할	A-3	47-1	1,658.7	1-1	256.7	
									1-2	256.4	
									1-3	256.3	
									1-4	256.3	
			2	633.0	2획지로 분할						
	49	2,890.8	1	1,370.6	4획지로 분할		49	2,890.8	1-1	567.0	2획지로 분할
									1-2	603.6	2획지로 분할
									1-3	200.0	
									2	377.4	
			3-1	942.0	2획지로 분할						
			3-2	200.8							
	50	3,162.7	1	438.1	2획지로 분할		50	3,162.7	1	438.1	2획지로 분할
									2	211.1	
			3	368.5							
			4	533.0	2획지로 분할						
			5	386.6							
			6	633.4	2획지로 분할						
			7	353.4							
			8	238.6							
			52	2,769.0	1				1,907.7	6획지로 분할	52
	2	861.3			3획지로 분할		2	861.3	3획지로 분할		

4. 단독주택용지(A-4 용도) : 변 경

기 정						변 경					
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	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 적(㎡)					위 치	면 적(㎡)	
A-4	6	2,107.7	1	406.8		A-4	6	2,107.7	1	406.8	
			2	953.9	2획지로 분할				2	953.9	2획지로 분할
			3	747.0	2획지로 분할				3	747.0	2획지로 분할
	25	1,810.2	1	572.5	2획지로 분할		25	1,810.2	1	572.5	2획지로 분할
			2	572.5	2획지로 분할				2	572.5	2획지로 분할
			3	665.2	2획지로 분할				3	665.2	2획지로 분할
	29	2,625.8	1-1	1,062.6	2획지로 분할		29	2,625.8	1-1-1	531.3	
									1-1-2	531.3	
			1-2	1,062.3	4획지로 분할				1-2-1	531.2	2획지로 분할
									1-2-2	531.1	2획지로 분할
			2	500.9					2	500.9	
	45	1,830.2	1-1-1	279.8			45	1,830.2	1-1-1	279.8	
			1-1-2	296.9					1-1-2	296.9	
			1-1-3	306.0					1-1-3	306.0	
			1-1-2	572.3	2획지로 분할				1-1-2	572.3	2획지로 분할
			1-2	375.2					1-2	375.2	
	46-1	2,448.1	1	248.8			46-1	2,448.1	1	248.8	
			2	514.5	2획지로 분할				2	514.5	2획지로 분할
			3-1	247.4					3-1	247.4	
			3-2	297.5					3-2	297.5	
			3-3	200.0					3-3	200.0	
			4-1-1	235.0					4-1-1	235.0	
			4-1-2	235.0					4-1-2	235.0	
			4-2	469.9					4-2	469.9	
	48-1	987.5	1	987.5	3획지로 분할		48-1	987.5	1	987.5	3획지로 분할
	51	3,428.4	1-1	519.4	2획지로 분할		51	3,428.4	1-1	519.4	2획지로 분할
			1-2	519.5	2획지로 분할				1-2	519.5	2획지로 분할
			2	764.7	2획지로 분할				2	764.7	2획지로 분할
			3-1-1	220.4					3-1-1	220.4	
			3-1-2	220.3					3-1-2	220.3	
			3-1-3	213.0					3-1-3	213.0	
			3-2	326.5					3-2	326.5	
			3-3	326.6					3-3	326.6	
			3-4	318.0					3-4	318.0	

5. 다세대/연립주택용지(B-1 용도) : 변 경

기 정						변 경					
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	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 적(㎡)					위 치	면 적(㎡)	
B-1	19	2,499.4	1-1	701.1		B-1	19	2,499.4	1-1	701.1	
			1-2	718.6					1-2	718.6	
			1-3	705.7					1-3	705.7	
			2	374.0					2	374.0	
	20	2,986.3	1-1	807.2			20	2,986.3	1-1	807.2	
			1-2	851.9					1-2	851.9	
			2	1,327.2					2	1,327.2	
	26	1,919.8	1	1,438.9			26	1,919.8	1-1	735.3	
									1-2	703.6	
			2	129.5					2	129.5	
			3	351.4					3	351.4	
	109-2	1,646.9	2-1	338.5			109-2	1,646.9	2-1	338.5	
			2-2	338.7					2-2	338.7	
			2-3	338.7					2-3	338.7	
			2-4	366.8					2-4	366.8	
			3	264.2					3	264.2	
	110	3,682.2	1-1-1	758.0			110	3,682.2	1-1-1	758.0	
			1-1-2	785.5					1-1-2	785.5	
			1-2	561.2					1-2	561.2	
			2-1	350.1					2-1	350.1	
			2-2	361.3					2-2	361.3	
			2-3	432.2					2-3	432.2	
			2-4	433.9					2-4	433.9	
	111	3,319.4	1	296.9			111	3,319.4	1	296.9	
			2	272.4					2	272.4	
			3	1,023.6					3	1,023.6	
			4-1	379.2					4-1	379.2	
			4-2	349.7					4-2	349.7	
			4-3	360.7					4-3	360.7	
			5-1	318.5					5-1	318.5	
			5-2	318.4					5-2	318.4	
	112	1,540.9	1-1	394.5			112	1,540.9	1-1	394.5	
			1-2	376.1					1-2	376.1	
			1-3	376.2					1-3	376.2	
			1-4	394.1					1-4	394.1	
	114	3,186.1	1	729.6			114	3,186.1	1	729.6	
			2	688.9					2	688.9	
			3	537.2					3	537.2	
			4	432.7					4	432.7	
			5	797.7	2획지로 분할				5	797.7	2획지로 분할

기 정						변 경					
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	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 적(㎡)					위 치	면 적(㎡)	
B-1	115	2,398.4	1-1-1	406.9		B-1	115	2,398.4	1-1-1	406.9	
			1-1-2	515.9					1-1-2	515.9	
			2-1	595.3					2-1	595.3	
			2-2	331.3					2-2	880.3	
			2-3	549.0							
	116	4,696.2	1-1	371.2			116	4,696.2	1-1	371.2	
			1-2	382.1					1-2	382.1	
			1-3	342.8					1-3	342.8	
			1-4	361.2					1-4	361.2	
			2-1	479.2	2획지로 분할				2-1	479.2	2획지로 분할
			2-2	479.1	2획지로 분할				2-2	479.1	2획지로 분할
			3	395.5					3	395.5	
			4-1	337.7					4-1	337.7	
			4-2	405.5					4-2	405.5	
			5-1	383.1					5-1	383.1	
			5-2	374.7					5-2	374.7	
			5-3	384.1					5-3	384.1	
	117	3,483.0	1	780.6	2획지로 분할		117	3,483.0	1	780.6	2획지로 분할
			2	711.9	2획지로 분할				2	711.9	2획지로 분할
			3	630.8	2획지로 분할				3	630.8	2획지로 분할
			4-1	345.6					4-1	345.6	
			4-2	333.4					4-2	333.4	
			4-3	346.8					4-3	346.8	
			4-4	333.9					4-4	333.9	
	118	3,836.8	1-1	393.0			118	3,836.8	1-1	393.0	
			1-2	392.9					1-2	392.9	
			1-3	392.9					1-3	392.9	
			2-1	660.6					2-1	660.6	
			2-2	653.5					2-2	653.5	
			3-1-1	330.3					3-1-1	330.3	
			3-1-2	332.0					3-1-2	332.0	
			3-2-1	341.1					3-2-1	341.1	
			3-2-2	340.5					3-2-2	340.5	
	119	3,328.3	1	1,769.4	3획지로 분할		119	3,328.3	1	1,769.4	3획지로 분할
			2-1	768.0					2-1	768.0	
			2-2	790.9					2-2-1	386.7	
	120	3,038.5	1-1	437.2					2-2-2	404.2	
			1-2	732.8	2획지로 분할						
			2	630.9							
			3	876.3							
			4	361.3							
	121	2,571.4	1-1	419.2			121	2,571.4	1-1	419.2	
			1-2	412.0					1-2	412.0	
			1-3	640.9					1-3	640.9	
			1-4	548.1	2획지로 분할				1-4	548.1	2획지로 분할
			2-1	287.4					2-1	287.4	
			2-2	263.8					2-2	263.8	
	122	1,351.9	1	308.6			122	1,351.9	1	308.6	
			2	375.1					2	375.1	
			3	506.2	2획지로 분할				3	506.2	2획지로 분할
			4	162.0					4	162.0	

6. 연립주택용지(C-1 용도) : 변 경

기 정						변 경					
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	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 적(㎡)					위 치	면 적(㎡)	
C-1	53-2	14,717.3	10	8,423.2	공동건축 권 장	C-1	53-2	14,717.3	10	8,423.2	공동건축 권 장
			11	6,294.1					11	6,294.1	

7. 아파트용지(D-1 용도) : 변 경

기 정					변 경						
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	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 적(㎡)					위 치	면 적(㎡)	
D-1	53-1	33,749.1	1	520.6	공동건축 권 장	D-1	53-1	33,749.1	1	520.6	공동건축 권 장
			2	570.9					2	570.9	
			3	200.2					3	200.2	
			4-1	4,009.6					4-1	4,009.6	
			4-2	5,540.6					4-2	5,540.6	
			5	3,347.5					5	3,347.5	
			6	2,725.2					6	2,725.2	
			7	778.4					7	778.4	
			8	1,157.9					8	1,157.9	
			9	14,898.2					9	14,898.2	
	69-1	20,697.3	1	5,891.5	공동건축 권 장	69-1	20,697.3	1	5,891.5	공동건축 권 장	
			2	14,805.8				2	14,805.8		
	70	28,370.9	1	28,370.9		70	28,370.9	1	28,370.9		
	93-1	18,948.9	3	18,386.6	공동건축 권 장	93-1	18,948.9	3	18,386.6	공동건축 권 장	
			8	562.3				8	562.3		
	94	39,757.4	1	30,135.1	공동건축 권 장	94	39,757.4	1	30,135.1	공동건축 권 장	
			2	9,622.3				2	9,622.3		
	101	43,298.5	1	43,298.5		101	43,298.5	1	43,298.5		
	102	35,665.9	1	35,665.9		102	35,665.9	1	35,665.9		

8. 아파트용지(D-2 용도) : 변 경

기 정						변 경					
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	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 적(㎡)					위 치	면 적(㎡)	
D-2	78-1	21,077.2	1	21,077.2		D-2	78-1	21,077.2	1	21,077.2	
	80-1	13,267.1	3	13,267.1			80-1	13,267.1	3	13,267.1	
	108-1	18,427.1	3	18,427.1			108-1	18,427.1	3	18,427.1	

9. 아파트용지(D-3 용도) : 변 경

기 정						변 경					
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	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 적(㎡)					위 치	면 적(㎡)	
D-3	46-2	320.0	6	320.0		D-3	46-2	320.0	6	320.0	

10. 상업용지(E-1 용도) : 변 경

기 정						변 경					
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	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 적(㎡)					위 치	면 적(㎡)	
E-1	72-1	4,692.8	2	418.9		E-1	72-1	4,692.8	2	418.9	
			3	582.0					3	582.0	
			4	1,345.7	2획지로 분할				4	1,345.7	2획지로 분할
			5	1,816.6	3획지로 분할				5-1	605.6	
									5-2	605.5	
									5-3	605.5	
	74-1	4,599.4	6	529.6			74-1	4,599.4	6	529.6	
			1	385.8					1	385.8	
			2	972.1					2	972.1	
			3	941.9					3	941.9	
			6	504.1					6	504.1	
			7	787.1					7	787.1	
	97-1	6,922.7	8	1,008.4	2획지로 분할		97-1	6,922.7	8	1,008.4	2획지로 분할
			2	412.9					2	412.9	
			3	412.8					3	412.8	
			4	443.7					4	443.7	
			5-1	728.6					5-1	728.6	
			5-2	1,463.4	2획지로 분할				5-2	1,463.4	2획지로 분할
			6	761.4					6	761.4	
			7	818.0					7	818.0	
			8	1,315.0					8	1,315.0	
			10	566.9					10	566.9	
	99-1	6,194.5	1	659.4			99-1	6,254.5	1	659.4	
			2	460.5					2	460.5	
			3-1	771.5					3-1	771.5	
			4-1	622.7					4-1	622.7	
			4-2	612.7					4-2	612.7	
			7	938.6	2획지로 분할				7	938.6	2획지로 분할
			8	1,635.1	3획지로 분할				8	1,635.1	3획지로 분할
			9	554.0					9	554.0	

11. 상업용지(E-2 용도) : 변 경

기 정						변 경					
도면 표시	가 구 번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	도면 표시	가 구 번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
			위치	면 적(㎡)					위치	면 적(㎡)	
E-2	71	3,547.9	1	1,825.1	2획지로 분할	E-2	71	3,547.9	1	1,825.1	2획지로 분할
			2	1,180.9					2	1,180.9	
			3	541.9					3	541.9	
	73	3,451.8	1	528.0			73	3,415.8	1	528.0	
			2	1,891.5					2	1,891.5	
			3	996.3					3	996.3	
	75	3,988.0	1	533.2			75	3,988.0	1	533.2	
			2-1	1,051.8					2-1	1,051.8	
			2-2	1,051.6					2-2	1,051.6	
			3	1,351.4					3	1,351.4	
	95	3,497.9	1	768.3			95	3,497.9	1	768.3	
			2	805.4					2	805.4	
			3	1,541.3					3	1,541.3	
			4	382.9					4	382.9	
	96	4,894.0	1	968.1			96	4,894.0	1	968.1	
			2	526.2					2	526.2	
			3	838.8					3	838.8	
			4	836.2					4	836.2	
			5	850.6					5	850.6	
			6	874.1					6	874.1	
	98	4,510.0	1	554.1			98	4,510.0	1	554.1	
			2	942.0					2	942.0	
			3	524.2					3	524.2	
			4	864.6					4	864.6	
			5	858.8					5	858.8	
			6	766.3					6	766.3	
	100	3,445.4	1	938.0			100	3,445.4	1	938.0	
			2	705.4					2	705.4	
			3	400.6					3	400.6	
			4	651.5					4	651.5	
			5	749.9					5	749.9	

12. 학교용지(F-1 용도) : 변 경

기 정						변 경					
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	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 적(㎡)					위 치	면 적(㎡)	
F-1	28	12,215.1	1	12,215.1	초 교	F-1	28	12,215.1	1	12,215.1	초 교
	78-2	11,419.5	2	11,419.5	중 교		78-2	11,419.5	2	11,419.5	중 교
	78-3	12,053.0	3	12,053.0	고 교		78-3	12,053.0	3	12,053.0	고 교
	88	11,247.3	1	11,247.3	초 교		88	11,247.3	1	11,247.3	초 교
	109-1	10,780.9	1	10,780.9	초 교		109-1	10,780.9	1	10,780.9	초 교

13. 공공청사용지(G-1 용도) : 변 경

기 정					변 경						
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	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 적(㎡)					위 치	면 적(㎡)	
G-1	69-2	1,264.9	3	1,264.9	우체국	G-1	69-2	1,264.9	3	1,264.9	우체국
	79-1	1,990.1	1	1,990.1	동사무소		79-1	1,990.1	1	1,990.1	동사무소
	80-3	970.3	1	970.3	경찰서		80-3	970.3	1	970.3	경찰서
	80-4	1,143.3	2	1,143.3	소방서		80-4	1,143.3	2	1,143.3	소방서

14. 주차장용지(H-1 용도) : 변 경

기 정					변 경						
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	도면 표시	가 구 번 호	면 적 (㎡)	획 지		비 고
			위 치	면 적(㎡)					위 치	면 적(㎡)	
주 차 장	72-2	1,409.5	1	1,409.5			72-2	1,409.5	1	1,409.5	
	74-2	1,409.1	5	1,409.1			74-2	1,409.1	5	1,409.1	
	97-2	1,411.3	1	1,411.3			97-2	1,411.3	1	1,411.3	
	99-2	1,408.2	6	1,408.2			99-2	1,408.2	6	1,408.2	

15. 획지의 합병 및 분할

-기 정

- 지구단위계획상 분할되는 필지가 최소면적 이상인 경우 분할 할 수 있다
- 2개 이상의 필지가 사용목적이 서로 같은 경우 합병할 수 있다

-변 경 : 분할 및 합병 기준 삭제

※ 기존 획지의 분할 및 합병 조건에 대한 규정은 한지처분이전 한지에정지 관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결정된 것으로

한지처분이 완료된 현재 시점에서의 획지의 분할 및 합병은 정연한 가로경관 형성을 유지하고자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

·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배치형태·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1. 단독주택용지(A-1)

도면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
A-1	1-1, 2, 3, 4, 9, 10, 11, 14, 15, 21, 22, 23-1, 23-2, 27, 54-1, 54-2, 55, 56, 57, 58-1, 59, 60, 61, 62, 64, 65-1, 66, 67, 79-2, 81-1, 82, 83, 86, 89, 90, 91, 92	용도	허용용도 • 별표1 A-1의 허용용도
			불허용도 • 별표1 A-1의 불허용도
		건 폐 율	• 60% 이하
		용 적 률	• 150% 이하
		높 이	• 3층 이하 (단,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)
		배 치	• 별표2의 A
		형 태	• 별표3의 A
		색 채	• 별표4의 A
		건축한계선	• 종로이상 도로에 건축한계선 1m 지정

2. 단독주택용지(A-2)

도면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
A-2	5, 24, 63, 68-1, 77-1, 80-2, 85-1, 87, 103-1, 104,105,107-1, 108-2	용도	허용용도 • 별표1 A-2의 허용용도
			불허용도 • 별표1 A-2의 불허용도
		건 폐 율	• 60% 이하
		용 적 률	• 180% 이하
		높 이	• 3층 이하 (단,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)
		배 치	• 별표2의 A
		형 태	• 별표3의 A
		색 채	• 별표4의 A
		건축한계선	• 종로이상 도로에 건축한계선 1m 지정

3. 단독주택용지(A-3)

도면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
A-3	7, 8-1, 12, 13, 16, 17-1, 30, 31, 32, 33, 34, 35-1, 36-1, 37-1, 38, 39, 40, 42, 43, 44, 47-1, 49, 50, 52	용도	허용용도 •별표1의 A-3의 허용용도
			불허용도 •별표1의 A-3의 불허용도
		건 폐 율	•60%이하
		용 적 률	•100%이하
		높 이	•2층이하
		배 치	•별표2의 A
		형 태	•별표3의 A
		색 채	•별표4의 A
		건 축 한 계 선	•종로이상 도로에 건축한계선 1m 지정

4. 단독주택용지(A-4)

도면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	계 획 내 용
A-4	6, 25, 29, 45, 46-1, 48-1, 51	용도	허용용도	•별표1의 A-4의 허용용도
			불허용도	•별표1의 A-4의 불허용도
		건 폐 율		•60%이하
		용 적 륜		•120%이하
		높 이		•2층이하
		배 치		•별표2의 A
		형 태		•별표3의 A
		색 채		•별표4의 A
		건 축 한 계 선		•종로이상 도로에 건축한계선 1m 지정

5. 공동주택용지(B-1:다세대/연립)

도면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	계 획 내 용
B-1	19, 20, 26, 109-2, 110, 111, 112, 114, 115, 116, 117, 118, 119, 120, 121, 122	용도	허용용도	• 별표1 B-1의 허용용도
			불허용도	• 별표1 B-1의 불허용도
		건 폐 율		• 60% 이하
		용 적 륜		• 200% 이하
		높 이		• 4층 이하 (단,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)
		배 치		• 별표2의 B
		형 태		• 별표3의 B
		색 채		• 별표4의 B
		건축한계선		• 종로이상 도로에 건축한계선 1m 지정

주) B-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-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

6. 공동주택용지(C-1:연립)

도면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	계 획 내 용
C-1	53-2	용도	허용용도	• 별표1 C-1의 허용용도
			불허용도	• 별표1 C-1의 불허용도
		건 폐 율		• 40% 이하
		용 적 륜		• 120% 이하
		높 이		• 4층 이하 (단,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)
		배 치		• 별표2의 C
		형 태		• 별표3의 C
		색 채		• 별표4의 C
		건축한계선		• 17m이상 도로변에 건축한계선 1m 지정

7. 공동주택용지(D-1:아파트)

도면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	계 획 내 용
D-1	53-1, 69-1, 70, 93-1, 94, 101, 102	용도	허용용도	• 별표1의 D-1의 허용용도
			불허용도	• 별표1의 D-1의 불허용도
		건 폐 율		• 30%이하
		용 적 륜		• 250%이하
		높 이		• 20층이하
		배 치		• 별표2의 D
		형 태		• 별표3의 D
		색 채		• 별표4의 D
		건 축 한 계 선		• 12~17m 도로변 : 건축한계선 1.0m • 20m 도로변 : 건축한계선 1.5m

8. 공동주택용지(D-2 : 아파트)

도면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	계 획 내 용
D-2	78-1, 80-1, 108-1	용 도	허용용도	•별표1의 D-2의 허용용도
			불허용도	•별표1의 D-2의 불허용도
		건 폐 율		•30%이하
		용 적 륜		•250%이하
		높 이		•15층이하
		배 치		•별표2의 D
		형 태		•별표3의 D
		색 채		•별표4의 D
		건 축 한 계 선		•12~17m 도로변 : 건축한계선 1.0m •20m 도로변 : 건축한계선 1.5m •단, 주된 개구부 있는 경우 15m 후퇴지정

9. 공동주택용지(D-3 : 아파트-KAL아파트)

도면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	계 획 내 용
D-3	46-2	용 도	허용용도	D-3(KAL 아파트)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
			불허용도	
		건 폐 율		
		용 적 륜		
		높 이		
		배 치		
		형 태		
		색 채		
		건 축 한 계 선		

10. 상업용지(E-1)

도면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
E-1	72-1, 74-1, 97-1, 99-1	용 도	허용용도 •별표1의 E-1의 허용용도
			불허용도 •별표1의 E-1의 불허용도
		건 폐 율	•70%이하
		용 적 륜	•330%이하
		높 이	•3~5층(주유소 및 액화가스 충전소는 예외)
		배 치	•별표2의 E
		형 태	•별표3의 E
		색 채	•별표4의 E
		건 축 한 계 선	•10m 도로변 : 건축한계선 1.0m •20m 도로변 : 건축한계선 1.5m
		벽 면 지 정 선	•상업지역 보행자도로변 : 1.0m

11. 상업용지(E-2)

도면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
E-2	71, 73, 75, 95, 96, 98, 100	용 도	허용용도 •별표1의 E-2의 허용용도
			불허용도 •별표1의 E-2의 불허용도
		건 폐 율	•70%이하
		용 적 륜	•550%이하
		높 이	•5~8층(주유소 및 액화가스 충전소는 예외)
		배 치	•별표2의 E
		형 태	•별표3의 E
		색 채	•별표4의 E
		건 축 한 계 선	•10m 도로변 : 건축한계선 1.0m •20m 도로변 : 건축한계선 1.5m •40m 도로변 : 건축한계선 3.0m
		벽 면 지 정 선	•상업지역 보행자도로변 : 1.0m

12. 학교용지(F-1)

구 분	도면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
기 정	F-1	28, 78-2, 78-3, 88, 109-1	용 도	허용용도 •별표1의 F-1의 허용용도
				불허용도 •별표1의 F-1의 불허용도
			건 폐 율	•30%이하
			용 적 륜	•100%이하
			높 이	•5층이하
			배 치	-
			형 태	-
			색 채	-
			건 축 한 계 선	•12~20m 도로변 : 건축한계선 1.0~2.0m •소음에 지장이 있고, 주된 개구부가 없을 경우는 3m, 주된 개구부가 있는 경우는 30m

13. 공공청사용지(G-1)

구 분	도면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
기 정	G-1	69-2, 79-1, 80-3, 80-4	용도	허용용도 • 별표1 G-1의 허용용도
				불허용도 • 별표1 G-1의 불허용도
			건 폐 율	• 60% 이하
			용 적 륜	• 250% 이하
			높 이	• 5층 이하
			배 치	-
			형 태	-
			색 채	-
			건축한계선	• 17~20m 도로변 : 1.0m

14. 주차장용지(H-1)

구 분	도면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계 획 내 용
기 정	H-1	72-2, 74-2, 97-2, 99-2	용도	허용용도 • 별표1의 H-1의 허용용도
				불허용도 • 별표1의 H-1의 불허용도
			건 폐 율	• 90%이하
			용 적 륜	• 1,500%이하
			높 이	• 28m이하
			배 치	-
			형 태	-
			색 채	-
			건축한계선	• 10~20m 도로변 : 건축한계선 1.0m

※ 건폐율, 용적률, 높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완화적용에 관한 사항

- 본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상업용지의 일부 획지에 대해 공동건축을 권장
-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일부 획지의 용적률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

·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1.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

도면번호	위 치	계 획 내 용	비 고
A-1	1-1, 2, 3, 4, 9, 10, 11, 14, 15, 21, 22, 23-2, 27, 54-1, 54-2, 55, 56, 57, 58-1, 59, 60, 61, 62, 64, 65-1, 66, 67, 79-2, 81-1, 82, 83, 86, 89, 90, 91, 92	•별표5의 A-1, A-2, A-3, A-4 전면공지, 대지안의 조경	-
A-2	5, 24, 63, 68-1, 77-1, 80-2, 85-1, 87, 103-1, 104, 105, 107-1, 108-2		
A-3	7, 8-1, 12, 13, 16, 17-1, 30, 31, 32, 33, 34, 35-1, 36-1, 37-1, 38, 39, 40, 42, 43, 44, 47-1, 49, 50, 52		
A-4	6, 25, 29, 45, 46-1, 48-1, 51		
B-1	19, 20, 26, 109-2, 110, 111, 112, 114, 115, 116, 117, 118, 119, 120, 121, 122	•별표5의 B-1, C-1, D-1, D-2 전면공지, 대지안의 조경	-
C-1	53-2		
D-1	53-1, 69-1, 70, 93-1, 94, 101, 102		
D-2	78-1, 80-1, 108-1		
D-3	46-2(6LT)	D-3(KAL 아파트)용도는 향후 KAL 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	
E-1	72-1, 74-1, 97-1, 99-1	•별표5의 E-1, E-2 전면공지, 대지안의 조경	-
E-2	71, 73, 75, 95, 96, 98, 100		

주) B-1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 시는 A-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

2. 차량 및 주차계획

도면번호	위 치	계 획 내 용	비 고
A-1	1-1, 2, 3, 4, 9, 10, 11, 14, 15, 21, 22, 23-1, 23-2, 27, 54-1, 54-2, 55, 56, 57, 58-1, 59, 60, 61, 62, 64, 65-1, 66, 67, 79-2, 81-1, 82, 83, 86, 89, 90, 91, 92	•별표6의A 차량 및 주차계획 (도면참조)	-
A-2	5, 24, 63, 68-1, 77-1, 80-2, 85-1, 87, 103-1, 104, 105, 107-1, 108-2		
A-3	7, 8-1, 12, 13, 16, 17-1, 30, 31, 32, 33, 34, 35-1, 36-1, 37-1, 38, 39, 40, 42, 43, 44, 47-1, 49, 50, 52		
A-4	6, 25, 29, 45, 46-1, 48-1, 51		
B-1	19, 20, 26, 109-2, 110, 111, 112, 114, 115, 116, 117, 118, 119, 120, 121, 122	•별표6의 B, C, D 차량 및 주차계획(도면참조)	-
C-1	53-2		
D-1	53-1, 69-1, 70, 93-1, 94, 101, 102		
D-2	78-1, 80-1, 108-1		
D-3	46-2(6LT)	D-3(KAL 아파트)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	
E-1	72-1, 74-1, 97-1, 99-1	•별표6의 E 차량 및 주차계획 (도면참조)	-
E-2	71, 73, 75, 95, 96, 98, 100		

주) B-1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-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

3.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

도면번호	위 치	계 획 내 용	비 고
-	도면참조	•별표7의 보행자전용도로	-

4. 단지내 시설물 배치 계획

도면번호	위 치	계 획 내 용	비 고
-	원당지구단위 계획구역	•별표8의 식재, 가로장치물, 조명, 포장 등	-

5. 공원 및 녹지에 관한 계획

도면 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계 획 내 용	
공원 · 녹지	공원	공	•근린공원 - 기존수림 및 지형을 이용한 휴게, 운동공간 위주로 계획하며 기존지형 및 수림의 훼손을 최소화 - 구릉지형 공원으로써 기존수림은 적극적으로 보존 활용하여 계획수림 - 지구주민을 위한 놀이, 운동, 휴식, 산책을 위한 공간을 조성 - 경계부에 차폐녹지대를 설치하여 공원의 존재인식 및 아늑한 위요 공간을 형성 •어린이공원 - 안전성, 흥미성, 쾌적성, 유지관리의 용이성, 보호자를 위한 휴식공간 및 인근주민의 시설이용 편리 도모가 가능한 놀이공원 계획 •근린공원, 어린이공원의 녹지율을 각각 85%, 45%이상 확보
	녹지	녹지	•완충녹지는 방음효과와 경관성 제고를 위하여 인위적 동산(Mounding)의 조성을 원칙으로 하고 양호한 수림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식생을 복층 구조화 유도 •속성수종을 선정, 완충녹지로서의 기능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계획 •경관녹지는 개발로 훼손될 기존수목중 이식 가능한 수목을 녹지대에 이식 처리하여 조기녹화 및 주변 식생과의 조화 도모

6.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

- 교통영향평가, 환경영향평가, 군부대 협의 등 과업추진 과정에서 협의완료,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, 본 계획에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규나 인천광역시 조례 및 서구 관련조례를 준용함
- 본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법, 시행령,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준용함
- 본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D-3(KAL 아파트)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

[별표 1] : 건축물 용도 분류표 - 기 정

구분	허 용 용 도	불 허 용 도	건폐율 (%이하)	용적률 (%이하)	높이
A-1	•단독주택 •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(타종 및 확장 장치가 없는 것에 한함) •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 시설, 노인복지시설	•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60	150	3층이하 (단,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)
A-2	•단독주택, 근린생활시설 -2층이상 주택의 1층이하에 한하며, 규모는 지상층 연면적의 4/10 이하	•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60	180	3층이하 (단,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)
A-3	•단독주택 •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(타종 및 확장장치가 없는 것에 한함) •교육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, 노인복지시설	•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60	100	2층이하
A-4	•단독주택, 근린생활시설 -2층이상 주택에 1층이하에 한하며, 규모는 지상층 연면적의 1/2 이하	•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60	120	2층이하
B-1	•다세대/연립, 단독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•종교집회장	•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60	200	4층이하 (단,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)
C-1	•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•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40	120	4층이하 (단,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)
D-1	•APT 및 부대복리시설	•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30	250	20층이하
D-2	•APT 및 부대복리시설	•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30	250	15층이하
D-3	D-3(KAL 아파트)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				

주) B-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-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

구분	허 용 용 도	불 허 용 도		건폐율 (%이하)	용적률 (%이하)	높이
		전층 불허용도	1층 전면불허용도			
E-1	•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•도시계획법령 및 인천시도시계획조례상 불허용도 •주택(단독, 공동, 주상복합) •판매 및 영업시설(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, 공항시설, 항만시설) •공장 •창고시설 •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(단, 주유소, 액화가스충전소 제외) •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 제외) •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•공공용지시설 중 교도소, 감화원, 발전소, 군사시설 •의료시설 중 격리병원, 장례식장(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제외)	•정육점, 찜물점, 난방, 배관, 페인트, 세탁소, 연탄배급소, 장의사, 목공소, 간판업, 염색, 고물상, 건축자재, 알미늄샷시업 등	70	330	3~5층
E-2	•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•주택(단독, 공동, 주상복합) •판매 및 영업시설(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, 공항시설, 항만시설) •공장 •창고시설 •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(단, 주유소, 액화가스 충전소 제외) •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 제외) •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•공공용지시설 중 교도소, 감화원, 발전소, 군사시설 •의료시설 중 격리병원, 장례식장(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제외)	•정육점, 찜물점, 난방, 배관, 페인트, 세탁소, 연탄배급소, 장의사, 목공소, 간판업, 염색, 고물상, 건축자재, 알미늄샷시업 등	70	550	5~8층

구분	허 용 용 도	불 허 용 도	건폐율 (%이하)	용적률 (%이하)	높이
F-1	•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교	•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30	100	5층이하
G-1	•1종근린생활시설중 동사무소, 파출소, 우체국, 보건소 등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 및 업무시설 중 공공 업무시설	•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60	250	5층이하
H-1	•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	•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90	1500	28m이하

주) 1·2종 근린생활시설

•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, 나, 다, 라, 마 항목

가. 슈퍼마켓 일용품(식품, 잡화, 의류, 완구, 서적, 건축자재, 의약품류 등)등의 소매점으
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,000㎡ 미만

나. 휴게 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㎡미만

다. 이용원, 미용원,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(공장이 부설된 세탁소는 제외)

라.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침술원, 점골원 및 조산소

마.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㎡ 미만

•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, 라, 바, 자, 타 항목

가. 일반음식점, 기원

라. 에어로빅장, 볼링장, 당구장(바닥면적 합계가 500㎡ 미만)

바. 금융업소, 사무소, 부동산 중개업소(바닥면적 합계가 500㎡ 미만)

자. 사진관, 표구점, 학원(바닥면적 합계가 500㎡ 미만, 자동차 및 무도학원 제외)

타. 노래연습장

[별표 1] : 건축물 용도 분류표 - 변 경

구분	허 용 용 도	불 허 용 도	건폐율 (%이하)	용적률 (%이하)	높이
A-1	•단독주택 •종교시설 (타종 및 화성 장치가 없는 것에 한 함) •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, 노인복지시설 •학교 시설 중 유치원	•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60	150	3층이하 (단,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)
A-2	•단독주택, 근린생활시설 -2층이상 주택의 1층이하에 한하 며, 규모는 지상층 연면적의 4/10 이하	•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60	180	3층이하 (단,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)
A-3	•단독주택 •종교시설 (타종 및 화성 장치가 없는 것에 한 함) •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, 노인복지시설 •학교 시설 중 유치원	•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60	100	2층이하
A-4	•단독주택, 근린생활시설 -2층이상 주택에 1층이하에 한하 며, 규모는 지상층 연면적의 1/2 이하	•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60	120	2층이하
B-1	•단독주택 •다세대/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(단,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적용에 한 함) •종교시설	•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60	200	4층이하 (단,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)
C-1	•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(단,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적용에 한 함)	•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40	120	4층이하 (단,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)
D-1	•APT 및 부대복리시설 (주택법 적용)	•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30	250	20층이하
D-2	•APT 및 부대복리시설 (주택법 적용)	•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30	250	15층이하
D-3	D-3(KAL 아파트)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				

주) B-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-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

구분	허 용 용 도	불 허 용 도		건폐율 (%이하)	용적률 (%이하)	높이
		전층 불허용도	1층 전면불허용도			
E-1	•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•주택(단독, 공동, 주상복합) •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, 공항시설, 항만시설 •공장 •창고시설 •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(단, 주유소,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제외) •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 제외) •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•교정 및 군사시설 •발전시설 •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•장례식장 (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제외) •동·식물 관련시설 •묘지시설	•정육점, 철물점, 난방, 배관, 페인트, 세탁소, 연탄배급소, 장의사, 목공소, 간판업, 염색, 고물상, 건축자재, 알미늄샷시업 등 ※단, 정육점, 세탁소에 한하여 도로 전면 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허용	70	330	3~5층
E-2	•불허용도 이외의 용도	•주택(단독, 공동, 주상복합) •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, 공항시설, 항만시설 •공장 •창고시설 •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(단, 주유소,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제외) •자동차관련시설(주차장 제외) •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•교정 및 군사시설 •발전시설 •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•장례식장 (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제외) •동·식물 관련시설 •묘지시설	•정육점, 철물점, 난방, 배관, 페인트, 세탁소, 연탄배급소, 장의사, 목공소, 간판업, 염색, 고물상, 건축자재, 알미늄샷시업 등 ※단, 정육점, 세탁소에 한하여 도로 전면 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허용	70	550	5~8층

구분	허 용 용 도	불 허 용 도	건폐율 (%이하)	용적률 (%이하)	높이
F-1	•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(단, 유치원은 제외)	•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30	100	5층이하
G-1	•1종근린생활시설 중 자치센터, 파출소, 우체국, 보건소 등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 및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	•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60	250	5층이하
H-1	•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	•허용용도 이외의 용도	90	1500	28m이하

※ 관련 법률 개정에 의한 명칭 변경은 개정 법률을 따름

[별표 2] : 건축물 배치 계획 - 변경없음

용 도	도면 표시	건 축 물 의 배 치
단독 주택 용지	A-1 A-2 A-3 A-4	◦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남향배치를 권장하기 위해 정남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적용하여 배치(단,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적용) ◦2면이상 도로에 접한 획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하며, 벽면의 방향이 도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배치 ◦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가 불가능한 구획도로에 접한 획지는 진입구변으로 옥외주차 및 마당을 설치하여 가능한 한 도로와의 이격 유도
공동 주택 용지	B-1 C-1 D-1 D-2	◦남향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정남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적용하여 배치 ◦광로변은 교통소음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직각 배치를 권장 ◦12m이상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유도 - 12m, 17m도로변의 건축한계선 - 1m, 20m도로변의 건축한계선 - 1.5m ◦아파트의 층수는 변화 있는 층수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권장
	D-3	D-3(KAL 아파트)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
상업 용지	E-1 E-2	◦건축물의 주된 벽면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와 방향과 일치 ◦20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건축물 전면의 도로폭이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할 것 ◦10m이상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- 10m, 20m, 40m 도로변에 건축한계선을 각각 1.0m, 1.5m, 3.0m 지정 ◦보행자도로변 양측에 보행환경 향상을 위해 벽면한계선을 1m(1층에 한함)를 지정
공공 청사	G-1	◦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하며, 주차장 및 차량출입구 등 옥외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권장 ◦20m 도로변으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 확보(건축한계선 : 1m)

주) B-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-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

[별표 3] : 건축물 형태 계획 - 변경없음

용 도	도면 표시	건 축 물 의 형 태 및 외 관
단 독 주 택 용 지	A-1 A-2 A-3 A-4	○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(지붕면적의 70%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)을 설치토록 권장하며, 경사지붕의 구배는 3/10 ~ 7/10 ○옥상의 물탱크 설치는 지양하며, 가압급수 방식으로 권장 ○담장 및 대문 - 담장 및 대문은 가로공간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단독주택의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담장 1.2m, 대문 1.8m 이하로 규제 - 담장과 대문의 형태는 투시형으로 하되 가급적 생울타리 등 자연요소를 활용하도록 권장 ○건축물의 외벽은 건축물별로 동일한 재료를 사용(외벽 색상은 원색사용 지양) ○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의장, 재료,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○근린생활시설의 1층 셔터는 벽면의 50%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(권장) ○대지를 기준으로 북쪽에 도로가 면해 있을 경우 설비배관 설치는 측면벽을 이용(권장)
공 동 주 택 용 지	B-1 C-1 D-1 D-2	○시각적 개방감 부여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 등을 위해 주동의 최대길이를 80m 이내로 제한 ○지 붓 -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원칙으로 함 - 경사지붕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%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 - 경사지붕의 설치시 구배는 3/10 ~ 7/10 -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○담 장 - 블록 외곽도로에 면한 단지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투시형이나 생울타리 담장으로 1.2m이하 설치 ○대지를 기준으로 북쪽에 도로가 면해 있을 경우 설비배관 설치는 측면벽을 이용(권장)→ B1용도에 한함
	D-3	D-3(KAL 아파트)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
상 업 용 지	E-1 E-2	○입면형태 - 20m 이상의 간선도로변에 접하는 대지내의 건축물은 입면형태가 주변건축물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 ○건축물의 입면 -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1층전면의 셔터는 벽면의 50%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

주) B-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-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반영

[별표 4] : 건축물 색채 계획 - 변경없음

용 도	도면 표시	건 축 물 의 색 채
단독 주택 용지	A-1 A-2 A-3 A-4	○원색의 사용을 금하며(강조색은 가능) 저채도 색채를 사용 ○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○검정색 계통의 외벽 마감재료 사용을 지양하여 밝은 분위기의 도시경관 형성(단 강조색은 가능) ○지붕의 색과 울타리를 동일계통 색채사용 권장
공동 주택 용지	B-1 C-1 D-1 D-2	○랜드마크(Landmark) 기능 및 단지내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밝고 명랑한 색조계열 사용 ○인천시의 시색인 청색 또는 구색인 하늘색을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토록 권장 ○지붕의 색과 울타리를 동일계통 색채사용 권장
	D-3	D-3(KAL 아파트)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
상업 용지	E-1 E-2	○주 활동축으로서 밝고 명랑한 색조계열을 사용하며, 원색의 사용을 금함(강조색은 가능) ○건축물의 전면색채는 동일용도의 인접건축물과는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하여 식별성 강화

주) B-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-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

※ 색채는 파랑, 회색, 녹색, 적황색 계통을 위주로 권장

※ 색채의 분류

○색채의 분류는 주조색, 보조색, 강조색 등 3가지로 분류하며, 이들 색채의 적절한 사용을 통하여 다양하면서도 통일감 있는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

- 주조색 : 대상지내 건축물의 도로변에 접하는 가장 잘 보이는 면에 배색되어 시각적 인상을 결정하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70%이상을 차지
- 보조색 : 주조색 보다는 좁은 면적에 배색되어 주조색 및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10~30%를 차지
- 강조색 : 건축물의 선이나 점같이 매우 좁은 면의 특히 강조할 곳에 배색되어 주조색이나 보조색과 강한 대비를 이루면서 전체에 활력을 주고 변화를 주는 색이며 외벽면적의 10%미만을 차지

[별표 5] :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- 변경없음

용도	도면 표시	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	
단독 주택 용지	A-1 A-2 A-3 A-4	전 면 공 지	- 인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인도와 동일한 포장재료 및 패턴사용을 유도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(화단, 담장, 노상주차장 등) 설치를 금지하며 인접 보도와 같은 높이로 조성 - 차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차도와 단차를 없애고 동일한 포장재료 사용 등으로 차량통행의 장애요소 제거 - 전면공지 지정 시 지상에 대한 공공의 이용권을 확보하고 지하는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
		대지내 조 경	- 인천광역시건축조례 기준을 준용하여 대지면적의 10%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 - 조경수는 인천시 시화인 장미의 식재를 권장
공동 주택 용지	B-1 C-1 D-1 D-2	전 면 공 지	- 인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인도와 동일한 포장재료 및 패턴사용을 유도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(화단, 담장, 노상주차장 등) 설치를 금지하며 인접 보도와 같은 높이로 조성토록 유도 - 차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차도와 단차를 없애고 동일한 포장재료 사용등으로 차량통행의 장애요소 제거 - 전면공지 지정시 지상에 대한 공공의 이용권을 확보하고 지하는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
		대지내 조 경	- 각 아파트단지의 녹지면적은 30% 이상으로 확보하여 조경 식재 - 조경수는 인천시 시화인 장미의 식재를 권장 12m이상의 도로변(공동주택지내) 대지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9조에 의해 설치하는 조경시설을 지정된 곳은 공공이 24시간 이용 가능한 가로변 소공원(쌈지공원 - Pocket park)으로 조성 권장 - 쌈지공원을 조경시설로 조성시 45㎡이상 설치 - 지상주차장이 넓은 경우, 사이에 화단 등을 조성하여 식재
	D-3	전 면 공 지 대지내 조 경	D-3(KAL 아파트)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
상업 용지	E-1	전 면 공 지	- 인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인도와 동일한 포장재료 및 패턴사용을 유도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(화단, 담장, 노상주차장 등) 설치를 금지하며 인접 보도와 같은 높이로 조성 - 차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차도와 단차를 없애고 동일한 포장재료 사용 등으로 차량통행의 장애요소 제거 - 전면공지 지정시 지상에 대한 공공의 이용권을 확보하고 지하는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40m 도로변 상업지역의 모퉁이변(도면참조)을 공개공지로 확보(규제)하여 이용자의 보행환경 활성화 및 휴게공간, 쉼터 역할을 유도 - 공개공지는 최소면적 45㎡이상으로 확보 - 공개공지의 설치형태는 피로티구조(1층 높이 4m이상), 쌈지공원구조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 가능 - 공개공지의 조성은 전면의 인도 및 전면공지와 조성형태를 통일시켜서 조성하게 하며, 인접대지의 공개공지나 쌈지공원이 있는 경우에는 연계 조성을 권장
	E-2	대지내 조 경	- 조경수는 인천시 시화인 장미의 식재를 권장 40m도로변의 대단위시설에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에 식재로 수림대 조성

주) B-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-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

[별표 6] : 차량 및 주차에 관한 계획 - 변경없음

용 도	도면 표시	차량 및 주차에 관한 계획	
단독 주택 용지	A-1 A-2 A-3 A-4	차량 동선	○ 개별필지의 진출입은 연접 도로중 폭이 좁은 도로에서의 진출입 권장 ○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는 가구의 장·단변 교차로 부근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○ 차량출입불허구간 - 교차로 측단, 버스정류장, 횡단보도, 육교등으로부터 10m이내 구간 (단, 필지의 규모가 협소하여 차량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)
		주차 시설	○ 단독 및 다가구 주택 건축시 가구당 1대이상 주차시설 확보 (권장)
공동 주택 용지	B-1 C-1 D-1 D-2	차량 동선	○ 차량출입구는 단지별로 1개씩만 허용함으로써 차량 혼잡방지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 ○ 단지내 동선을 Cluster 형식으로 계획하여 통과교통을 배제하고, 차량동선과 보행동선과의 상충을 최소화 ○ 원활한 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교차 되도록 하며, 교차부에서 30m이상 이격하여 배치 ○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외곽도로와 T형 교차를 원칙으로 하며, 차량출입구가 타 단지의 차량출입구와 30m이상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+자형 교차를 유도
		주차 시설	○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한 설치기준을 적용 ○ 지하주차장은 아파트와 직접 연결되도록 지하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,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권장 ○ B-1용도(다세대/연립)에서의 건축시 가구당 1대이상 주차시설 확보 (권장)
	D-3	차량 동선 주차 시설	D-3(KAL 아파트)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
상업 용지	E-1	차량 동선	○ 20m폭 이상의 도로에서 주차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 (통로의 폭은 대지경계선에서 각각 3m이상 확보) ○ 20m폭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가각부의 경우 각 10m구간에서의 주차출입을 금지 ○ 통로주차램프 및 카엘리베이터의 시작부분은 도로와 접하는 건축선에서 최소 3m이상 이격시켜서 대기주차에 의한 보행장애 방지
	E-2	주차 시설	○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준용함 ○ 300㎡이하의 대지가 옥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2개 대지별로 공동으로 주차장 설치를 권장하여 주차장의 효율을 높이고 주차출입구의 개소 축소

[별표 7] :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- 변경없음

도면 표시	보행동선에 관한 계획	
A-1, A-2 A-3, A-4 B-1, C-1 D-1, D-2 E-1, E-2	보행자 전용도로	- 차량의 통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도로로서 포장패턴이나 상징적인 환경장치물 설치를 유도하여 장소성과 활동성을 제고 - 녹지조성보다는 포장 및 시설물 위주로 설치하고, 인접대지내 공지 및 전면공지와 연계 조성 - 공공성이 있는 건축물에 장애인 램프 설치를 고려하여 대지의 높이와 주출입구의 높이차를 15cm 이내로 권장
D-3	보행자 전용도로	D-3(KAL 아파트)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

[별표 8] : 단지 내 시설물 배치계획 - 변경없음

구분	단지내 시설물 배치계획
가로 시설물	- 가로시설물의 형태, 크기, 배치, 구조 및 재료는 주위환경과 어울리도록 설계 - 보행이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- 대중 인식도가 높은 옥외시설물 또는 안내판 등의 시설물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 - 상호보완적 가로시설물을 집합시켜 여러 기능을 갖도록 설계 - 형태 상호간에 통일성, 시각적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하여 가로 장치물 설계
식재	- 지역 특성 및 계절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수종을 선택하여 가로별로 특징적 경관을 연출하도록 식재 - 서구의 구목인 은행나무 등의 식재 유도 - 차도로부터 0.5m, 건물외벽으로부터 2~3m 이상 띄워서 식재 - 도로 교차점 주변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좌우 20m의 구간내에 수목의 식재 금지
포장	-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-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차량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재료의 사용 - 재료는 아스팔트 및 유색아스팔트 사용 - 보도 - 보행의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패턴의 블록 사용 - 포장구획을 소단위로 하여 친근감 유지 - 연석 - 횡단로 등에서는 경사면으로 처리 - 재료는 화강석(인조화강석)등 차량에 의해 파손되지 않는 재료 사용
조명 시설	- 가로등 - 도로의 교통량, 도로폭, 바닥포장의 재질, 건축물의 재질(반사정도) 등을 고려하여 높이, 위치, 밝기 등을 결정하여 설치 - 보행등 - 연속적으로 일정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하며, 가급적 보도폭 전체로 빛이 닿도록 계획
기타 사항	육교, 계단, 경사로의 설치 및 조명시설, 옥외가로시설물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반 관련 규정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(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, 도로구조령의 도로 조명 시설기준, 옥외광고물 관리법, 인천시 C·I·P 기준 등)
옥외광고물 계획	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,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따름